붙 임

가계부채 연착륙 종합대책

2011. 6. 29

금 융 위 원 회

금 융 감 독 원

목 차

Ⅰ. 가계부채 현황 및 평가 ····· 1

1. 현황 ····· 1

2. 가계부채 증가 추이 ····· 2

3. 평가 ····· 5

Ⅱ. 가계부채 연착륙을 위한 종합대응방안 ····· 8

<기본방향> ····· 8

<금융부문 대응방안> ····· 9

1. 가계부채 적정증가를 위한 관리방안 ····· 9

2. 가계대출구조 개선방안 ····· 14

3. 금융소비자보호 강화방안 ····· 15

4. 서민금융기반 강화방안 ····· 17

Ⅲ. 추진 계획 ····· 20

(별첨) 금융부문대책 추진일정 ····· 21

I. 가계부채 현황 및 평가

1 현 황

□ **11.3말** 현재 **가계부채**는 **801.4조원**으로 **가계대출이 752.3조원***(은행권 435.1조+비은행권 317.2조), **판매신용이 49.1조원**

* **주택담보대출**은 **364.9조**(은행 289.9조, 비은행 75.0조)로 **전체 가계대출의 48.5%**

□ **가계부채**는 **99년~10년중 연평균 13.0%** 증가하여 **경상 GDP 증가율**(7.3%)을 **상회**

□ 이에 따라 가계부채는 경제 · 소득규모 대비 **주요국에 비해 높은 수준**

◦ **09년 기준**으로 **GDP대비 86%(12위), 가처분소득 대비 153%(9위)**이며, **OECD 국가 평균을 상회**

	한국	미국	영국	일본	OECD평균
■ 가계부채/GDP(%)	**85.9 (12위)**	100.2	110.0	80.4	**77.0**
■ 가계부채/가처분소득(%)	**152.7 (9위)**	132.0	171.5	129.5[1)]	**134.1**

주) 자금순환표상 개인금융부채(09년, 통계가 공표된 27개국 기준), 1) 08말 기준

< 가계부채 추이 >

* 한은 가계신용기준

(조원)	'99말	'02말	'05말	'07말	'09말	'10말	'11.3말
가계신용	214.0	439.1	521.5	630.7	733.7	795.4	**801.4**
가계대출	191.9	391.1	493.5	595.4	692.0	746.0	**752.3**
- 은 행	76.3	222.0	305.5	363.7	409.5	431.5	**435.1**
주담대	-	-	190.2	221.6	264.2	284.5	**289.9**
- 비은행	115.6	169.1	188.0	231.7	282.5	314.5	**317.2**
(상호금융)[1)]	37.8	45.7	77.8	101.4	132.2	154.8	**157.4**
(여전사)	16.2	57.1	23.8	30.7	31.5	36.3	**36.9**
주담대[2)]	-	-	-	46.6	64.6	73.1	**75.0**
판매신용[3)]	22.1	47.9	28.0	35.3	41.7	49.4	**49.1**

1) 단위 농・수・축협, 산림조합, 신협, 새마을금고 등, 2) 보험사・여전사 등 제외,
3) 카드사 신용판매, 여전사 및 판매회사(백화점 등) 제공 신용

2 가계부채 증가 추이

◇ 외환위기 이후 꾸준히 증가해 왔으며, **99~02년 외환위기 이후 경제회복기, 05~06년 주택시장 호황기**에 급증

(연평균 증가율)		**'99~'02**	**'03~'04**	**'05~'06**	**'07~'10**
■ 가계 부채 (%)	:	**24.3**	4.0	**10.7**	8.1
■ 경상 GDP (%)	:	9.5	7.1	4.8	6.6

□ **(99~02년) 시중유동성 증가**, 기업대출수요 감소, **가계수지 악화** 등에 따른 **저축률 하락**과 함께 **가계부채 급증**(연평균 24%)

◦ 금리급락 등으로 **시중유동성은 증가**하는 반면, **기업**은 **구조조정 · 재무구조 개선** 추진으로 **대출수요가 감소**

* 유동성 증가율(L) - GDP 증가율(%) : (99년)△0.3, (00년)2.1, (01년)4.0, (02년)3.0
* 제조업 부채비율(%) : (97년) 396, (99년) 215, (01년) 182, (02년) 135

- **가계대출 수요**가 **기업대출수요 감소**를 **점진적으로 대체**

* 은행대출 증가율(%) : [가계] (99년)44.2, (00년)40.5, (01년)46.1, (02년)41.7
  [기업] (99년)18.1, (00년)18.0, (01년)△1.0, (02년)24.8

◦ 외환위기이후 **소득여건이 급격히 악화**되는 가운데 **교육비 · 통신비 등 지출부담은 증가**하면서 **저축률이 급감**

* 개인 저축률(%) : (99년) 21.6, (00년) 8.6, (01년) 4.8, (02년) 0.4
* 가계지출 중 교육비+통신비 비중(%) : (97년)13.6, (99년)15.6, (01년)17.2, (02)17.6

◦ **세제지원 및 규제완화** 등으로 **카드사 등 여전사**의 가계대출(카드론 · 현금서비스) 및 **판매신용**도 **30%대 증가세**를 시현

* 여전사 가계대출 증가율(%) : (99년)35.0, (00년)107.4, (01년)30.0, (02년)30.8
* 여전사 판매신용 증가율(%) : (99년)30.9 (00년) 35.5, (01년)62.3, (02년)29.2

□ (03~04년) **카드사태** 등에 따른 **신용경색** 등으로 **증가세가 크게 둔화**(연평균 4.0%)

◦ **여전사 등 비은행권** 가계대출이 **크게 위축**된 가운데 **판매신용**은 **감소**

* 03~04년중 연평균 증가율(%) : (은행대출)11.6, (비은행대출)1.2, (판매신용)△27.4

□ (05~06년) **부동산경기 과열** 등에 따라 **주택담보대출**을 중심으로 **가계대출 증가세**가 **재연**(연평균 10.7%)

◦ **집값 상승이 지속**되는 가운데 **은행의 대출확대 경쟁** 등 시중자금의 **주택시장 쏠림현상** 발생

* 수도권 아파트가격/은행 주담대 증가율(yoy, %) : (05년)7.2/12.4, (06년)24.6/14.1

□ (07년 이후) **주택대출 규제 강화, 기업 자금수요회복** 등의 영향으로 **다소 둔화**되었으나 **증가세는 지속**(연평균 8.1%)

◦ **은행권**은 **경제성장률 이내**로 조정되고 있으나 **주택담보대출을 중심**으로 **비은행권**의 **증가폭은 확대**

* 은행 가계대출 증가율(%) : (07년)5.5, (08년)6.8, (09년)5.4, (10년)5.4

* 07~10년 연평균 증가율(가계대출/주담대, %) : (은행)5.7/7.0, (비은행)11.4/16.2

* 전체 가계대출 중 비은행 비중(%) : 06말 37.1% → 10말 42.2%

◦ **08년 글로벌 금융위기** 과정에서도 **증가세 지속**(9.1%)

<시기별 가계부채 추이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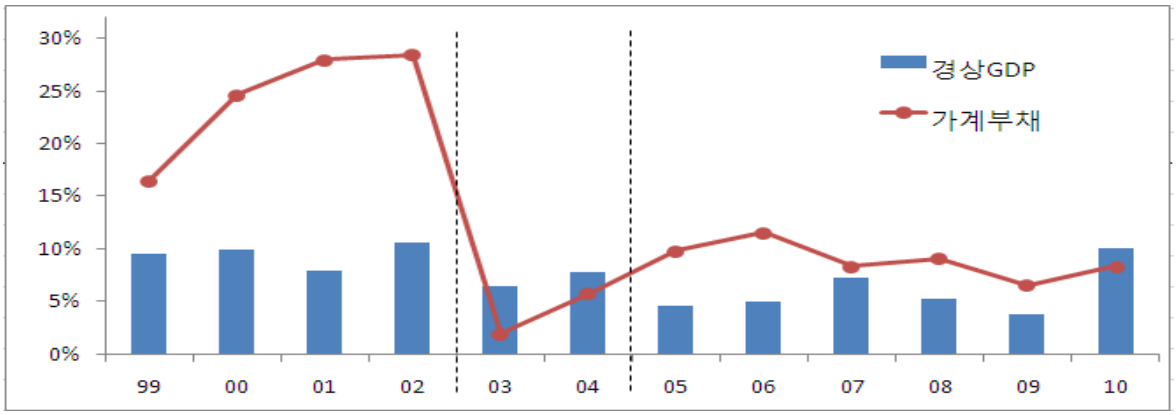

< 참고 : 비은행 가계대출 증가동향 >

□ 07년부터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**비은행권 가계대출**이 빠르게 증가(**연평균 11.4%**)

(yoy, %)		'07	'08	'09	'10	('07~'10 평균)
* 은행 가계대출	:	5.0	6.8	5.4	5.4	**5.7**
* 비은행 가계대출	:	13.5	12.1	8.7	11.3	**11.4**
(주택담보대출)	:	(-)	(20.1)	(15.4)	(13.1)	**(16.2)**

◦ 전체 가계대출 중 **비은행권 비중**도 **상승**(06말 **37.1%**→10말 **42.2%**)

□ 업권별로는 **상호금융이 빠른 증가세**를 지속하는 가운데 **10년들어 여전사·저축은행** 등의 증가세가 두드러짐

◦ (**상호금융**) 세제혜택* 등에 따른 **수신 증가 등**의 영향으로 **07년이후 평균 15.4% 증가**

* 상호금융 예탁금에 대해서는 3천만원까지 이자소득세 비과세(09.1월부터 비과세한도 2천만원 → 3천만원으로 확대)
* 07~10년 연평균 상호금융 예금 증가율 : 15.9% (대출 증가율 15.4%)

◦ (**저축은행**) 아직까지 가계대출 규모는 크지 않으나 **PF대출 시장 위축**에 따라 **가계대출이 확대**(10년중 11.3% 증가)

◦ (**여전사**) **10년중 카드론**(35.2%)을 중심으로 **가계대출**(15.2%) 증가, 경기회복세와 더불어 **신용판매**(12.3%)도 **급증**

< 비은행권 가계대출 추이(한은, 가계신용) >

	'06말	'07말	'08말	'09말	'10말	'11.3말
비은행권 합계	204.2	231.7	259.8	282.5	314.5	317.1
(전년동기비)	(10.7%)	(13.7%)	(15.4%)	(10.9%)	(16.4%)	(10.8%)
상호금융[1)]	87.5	101.4	118.	132.2	154.8	157.4
보험	50.9	55.9	61.7	64.2	66.0	66.7
여전사	25.2	30.7	31.3	31.5	36.3	36.9
저축은행	7.7	6.8	6.9	7.3	8.2	8.4

1) 상호금융, 신협, 새마을금고

3 평 가

□ 외환위기 이후 가계부채의 증가는 **저금리 기조, 풍부한 시중 유동성, 부동산가격 상승**(및 추가상승 기대심리), **금융회사의 대출확대 경쟁**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

□ 가계부채는 **경제성장 및 금융발전 과정**에서 **지속적**으로 **늘어나는 것**이 일반적

> ※ **OECD 대부분의 국가**에서 GDP 대비 가계부채는 지속 증가추세
>
> * 한국 : (01) 61.2% → (09) 85.9% (+24.7%p)
> * OECD 평균 : (01) 51.8% → (09) 77.0% (+25.2%p)

◦ 특히, 외환위기 이후 **내수회복 등 위기극복·경제성장**에 기여

* 99년~02년중 GDP 증가에 대한 민간소비 기여율: **74.4%** (90년 이후 평균 48%)

◦ 또한, 외환위기 이후 과거 기업에 편중된 대출이 시정되면서 가계의 금융이용이 확대된 측면도 있음

- 외환위기 이전 **기업부문**에 **집중**되고 **가계부문**에는 **위축**되었던 **기업과 가계간 자금배분의 불균형**이 **선진국과 유사한 수준으로 조정**

- 이에 따라 **기업대출 비중이 줄어들고 기업 부채비율도 크게 개선**

* 은행 총대출 중 가계대출 비중(%) :
  (98말) 27.7 → (02말) 47.1 → (10말) 43.7 [美(04말) 45.2, 英(03말) 46.0]
* 기업부채비율(%) : (98년) 303.0, (02년) 135.4, (05년) 100.9, (09년) 109.6

□ 현재 가계부채 수준이 주요국에 비해 다소 높으나, **건전성, 차주 구성, 금융사 손실흡수능력, 가계 자산상황** 등을 감안시 아직까지는 **대체로 관리가능**한(broadly manageable) 수준으로 판단

◦ **금융권 연체율 등 가계대출의 건전성은 양호**한 수준 유지

* 가계대출 연체율(전업권, %): (06)2.44, (07)1.94, (08)1.91, (09)1.76, (10)1.68
(은 행, %): (06)0.70, (07)0.55, (08)0.60, (09)0.42, (10)0.61
* 주택담보대출 연체율(전업권, %) : (10.12월) 0.87, (美, 10.4/4) 8.22

◦ 그동안 가계대출의 증가는 주로 채무상환능력이 양호한 **고신용층 중심**으로 이루어져 **과거에 비해 이들 계층의 대출비중이 증가**

* 고신용등급(1~4등급) 대출 비중(%) : (06말) 62.0, (08말) 62.4, (10말) **70.2**

※ □ **서브프라임 사태**의 경우, 비우량 대출인 **서브프라임 대출 비중이 01년 8.6%에서 06년 20%까지 확대**

◦ 가계대출의 절반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주택담보대출의 경우에도 선진국들에 비해 아직 **담보인정비율**(LTV)**이 상당히 낮음**

* □ **47%,** 美 75%, 英 61%, 佛 80%, 獨 74%, 홍콩 64% ('09말 기준)

- BIS 비율·당기순이익 등 **금융회사의 충격흡수능력도 높아진 상황**

* BIS 비율(은행, %) : ('06말)12.8, ('08말)12.3, ('10말)**14.6** (글로벌 20대 은행 13.6)
* 당기순이익(은행, 조원) : ('07년) 15.0, ('08년) 7.7, ('09년) 6.9, ('10년) **9.3**

◦ 또한 최근 수년간 가계금융부채 증가와 동시에 금융자산은 더욱 크게 증가하여 **가계 금융부채대비 금융자산비율**은 **오히려 상승**

* 가계금융자산 / 부채 (배) : ('08말) 2.09, ('09말) 2.28, ('10말) 2.32, ('11.3말) 2.33

※ 가계금융부채대비 금융자산비율은 **02년 이후 OECD 평균 △0.67배 감소**한 반면, **우리는 +0.12배 증가**

□ 다만, 가계대출의 높은 증가세, 취약한 대출구조, 저신용층의 상환여력 문제 등 **가계부채 잠재 위험요인**을 **개선하지 않을 경우** 향후 **우리경제 · 금융시장**에 **불안요인**으로 **작용**할 가능성이 있음

◦ 특히, 가계대출의 **변동금리 · 일시상환 대출비중이 높아 외부충격에 취약한 구조**

- **변동금리부 대출비중이 높고, 금리 적용기간이 짧음**

* 주담대 중 변동금리 비중(09말, %) : **(日)95**, (美)10, (英)62, (佛)13, (獨)10
* 금리적용기간(변동주기)는 통상 3개월 수준(美은 통상 1년, 日은 6개월 이상)

- **일시상환 대출비중**이 **높아 만기시 상환부담이 크고 차환위험**에 노출

■ **분할상환 대출**의 경우에도 **거치기간 연장 관행** 지속

* 일시상환 비중(은행) : **(日) 41%**('10말), (美) 9.7%('10말), (EU) 7.5%('09말)
* 주담대 중 이자만 내는 대출(일시상환+거치기간중인 분할상환) 비중 : 80%('10말)

<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상환유형별 현황('10년말)>

일시상환	분할상환		합계
	거치기간중	원금상환중	
117.4조	**108.8조**	58.8조	284.5조
(41.3%)	**(38.2%)**	(20.5%)	(100%)

: '10년말 현재 이자만 내고 있는 대출

◦ 저소득층의 **채무상환능력**이 **취약**하고 **경기 · 금리여건**에 대한 **민감도가 큰 저신용층**의 **어려움**이 상존

* 금리1%p 상승시	1분위	2분위	3분위	4분위	5분위	전체
순이자부담(만원)	16.1	13.0	9.8	9.0	17.1	12.4
(가처분소득대비)	(3.2%)	(1.0%)	(0.4%)	(0.4%)	(0.3%)	(0.4%)

주) 통계청 2010년 가계신용조사, 금융부채 보유가구의 금리민감 자산 및 부채 기준

➡ 지금부터 **가계부채**에 대한 **선제적 관리 노력**을 통해 **우리 경제의 대응여력을 강화해 나갈 필요**

Ⅱ. 가계부채 연착륙을 위한 종합대응방안

<기본 방향>

◇ 가계부채 문제가 향후 **경제 불안요인으로 작용**하지 않도록 **거시·미시적 정책대응을 강화**하되, 가계충격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함으로써 **가계부채 연착륙 도모**

◇ **가계부채 안정적 관리**를 위한 **범정부적인 종합대책 방안 강구**

① **시중유동성 안정적 관리**, 주택시장 안정기조 지속, 투자 활성화 등을 통해 **자금의 생산적인 흐름을 유도**

② 물가안정과 일자리 창출·성장동력 확충 등을 통한 **가계의 상환능력을 제고**

※ ①, ②과제의 세부 정책대안("2011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" 참조)은 중앙은행의 통화정책과 정부의 종합적인 경제정책운용 등을 통해 지속 대응

③ 거시경제 환경조성의 지속적인 뒷받침하에 **가계부채 관리, 건전성 제고**를 위한 **금융부문의 정책대응을 강화**

◦ 금융회사의 과도한 대출증가요인 차단, 신중한 가계대출 관행유도 등을 통해 **적정수준의 가계부채 증가 도모**

- 금융회사의 **위험관리 및 손실흡수능력을 제고**

◦ 고정금리·비거치식 분할상환 주택담보대출 활성화 등 **대출구조를 개선**

◦ 가계대출을 받는 **금융소비자**에 대한 **보호장치**를 **강화**

④ 가계부채 조정과정에서 어려움이 생길 수 있는 서민층에 대해서는 **「서민금융 기반강화 종합대책」**(11.4.15일 발표)을 토대로 **보완대책을 추진**

➡ 점진적으로 OECD 평균 수준으로 가계부채를 안정화

1 가계부채 적정증가를 위한 관리방안

가. 전체 가계대출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은행권의 가계대출 관리를 강화

□ **은행 가계대출 적정증가 유도**

① **고위험대출 및 편중대출**에 대한 **관리 강화**

◦ **고위험 주택담보대출**에 대해 **BIS 위험가중치 상향적용**

* 현재는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위험도와 무관하게 은행별 위험가중치를 일률적으로 적용

※ 고위험 대출(ㅁㅁ) : 구체적인 기준은 추후 별도 마련

① 만기 5년 이하 일시상환 대출 중 차주의 부채비율(총대출금/연소득)이 500%를 넘는 경우

② 3건 이상 대출 보유자에 대한 대출

◦ **특정부문**(예 : 주택담보대출) **편중대출**(예 : 자기자본의 2배 초과)시 **초과분**에 대해 **BIS 위험가중치 상향적용**

⇨ **영향분석 · 검증**을 거쳐 **세부시행방안** 결정

② **은행 영업점 성과평가 지표개편**

◦ **가계대출 실적에 따른 평가를 폐지**하는 등 **수익성 및 건전성 지표**를 **보강**토록 지도

③ **채무자의 상환능력 확인 관행 정착**

◦ 현재 **DTI 의무적용 대상대출**은 **전체 주택담보대출의 약 27.1%** 수준(은행기준, 10.1~6월)

* 의무적용대상이 아닌 대출의 경우, LTV 비율만 감안하고 소득 등 상환능력에 대해서는 확인업무가 소홀

◦ 앞으로 **소득증빙자료 확인** 등 차주의 채무상환능력 확인을 통해 **건전한 주택담보대출 관행** 정착을 유도(CAMELS 반영 등)

◦ 자율정착 추이를 보면서 **DTI 적용대상의 단계적 확대** 검토

* 단, 충분한 예고 및 준비기간을 부여하는 등 시행상의 부작용이 없도록 추진

□ **은행 예대율 관리 강화**

◦ **100% 초과 은행** : 100% 준수기한(13년말)을 **12.6월말**까지 **1년6개월 단축** 지도

◦ **100% 미달 은행** : **준수기한**(12.6월말)중 다시 **100%를 초과하지 않도록** 지도

* 11.3월말 현재 일반은행(13개) 예대율 : 97.1%

나. 증가속도가 빠른 제2금융권 가계대출의 증가요인을 억제하고 건전성을 강화하되, 단계적 시행 등을 통해 서민금융이 위축되지 않도록 추진

[카드사 등 여신전문금융회사]

□ **여전사의 외형 확대를 적정 수준으로 제한**

① **카드자산, 신규 카드발급, 마케팅 비용(율)** 등 3개 부문에 대해 **연간 적정증가율 설정·관리**(6.7일 旣발표)

◦ **회사별 목표수준**에 대해 **정기점검**

◦ 과도한 외형확장을 지속하는 회사에 대해 **특별점검**을 실시하고 위규행위 적발시 **엄중 제재**

② **레버리지**(총자산/자기자본) **규제도입을 통한 관리 강화**

◦ 업무특성 등을 고려하여 **신용카드사와 여타 여전사간 규제수준**을 **차등화**

◦ 규제 한도를 초과한 여전사에 대해서는 **3년의 유예기간**을 부여하여 **점진적인 규제준수**를 유도

* 레버리지 현황(평균/최고, 11.3말, 배) :
(카드사) 4.1 / 7.7, (할부사) 8.4 / 20.1, (리스사) 7.2 / 18.0

③ **회사채 발행 특례**(자기자본대비 10배) **폐지**(6.7일 旣발표)

* 레버리지 규제로 대체

□ **대손충당금 최소적립률**을 **단계적으로 강화**

◦ **카드대출**에 대한 **대손충당금 적립률 상향조정**(6.15일 규정개정 완료, 상반기 결산부터 적용)

* 정상 여신 : 1.5% → 2.5%, 요주의 여신 : 40% → 50%

◦ **여타 여전사**의 경우에도 **리스크 수준 등을 고려**하여 단계적으로 강화

- **요주의 여신**('12년) : 2%(할부대출), 8%(가계대출) → **10%**

- **정상 여신** : 1%(은행과 동일) → 적립비율 상향폭은 **리스크 수준 및 레버리지 규제도입 효과** 등을 감안하여 추후 검토

□ **신용카드사간 건전한 영업경쟁** 유도(3.30일 旣발표)

◦ **카드 모집실태 및 마케팅 경쟁 실태** 등에 대한 **점검**을 **강화**하고 **불법 모집인**에 대한 제재 강화

* 모집실태 점검주기 단축(매반기→매분기), 여신금융협회 합동기동점검반 강화(20명→30명, 금감원 참여(월1회))

◦ 다중채무자 발생 억제 및 카드사의 건전성 관리강화를 위해 **복수카드 정보공유 범위를 확대**(3장→2장이상 소지자)

* 현재 신용카드 3개 이상 소지자의 카드 사용실적, 이용한도 등에 대해 카드사간 정보공유

[상호금융]

□ 상호금융 **예탁금**에 대한 **비과세한도**가 **확대**(09.1월, 2천→3천만원)되면서 **수신이 급증**하고 **가계대출이 확대**

* 09~10년중 예수금 증감 (증가율) : (상호금융) 57.5조(29.1%) (은행) 191.8조(21.9%)
가계대출 증감(증가율) : (상호금융) 36.8조(31.2%) (은행) 42.9조(11.0%)

※ **<참고> 상호금융회사 비과세 예금 개요**

○ 농·수·신협, 산림조합, 새마을금고에 예탁한 1인당 3천만원 이하인 예탁금 이자소득세(15.4%) 비과세(조세특례제한법 §89의3)

- 혜택 : 비과세(~'12말) → 5%과세('13) → 9%과세('14~)

⇒ 비과세 혜택은 **12년말 예정대로 종료**하여 **가계대출 확대요인**이 된 **상호금융 수신증가**를 **최대한 정상화**

□ 상호금융 **여신 건전성 분류기준 및 대손충당금 적립률**을 은행 등 **타금융권 수준**으로 **강화**

◦ **건전성 분류기준 강화**

		<현 행>		<개 선(안)>
* 정상여신	:	3개월미만 연체	→	1개월미만 연체
* 요주의여신	:	3~6개월미만 연체	→	1~3개월미만 연체
* 고정이하여신	:	6개월이상 연체	→	3개월이상 연체

◦ **대손충당금 최소적립률 상향조정**

* 정상여신 (0.5% → 1%), 요주의여신 (1% → 10%)

⇒ **2년 유예**후 **3년간 단계적**으로 **건전성 분류기준 및 비율 상향조정**(유예기간 중 최소적립률 이상으로 적립토록하여 충격흡수 유도)

□ **상호금융 대출한도 강화**

① **자기자본 기준 동일인 대출한도 설정**

- 현재는 자산총액 기준 동일인 대출한도(5억원)는 있으나 **자기자본기준 한도가 없어 합리적 수준의 최고한도 설정**

* 동일인 한도 : 자기자본의 20%와 자산총액의 1%(5억원 한도) 중 큰 금액
* 자기자본/동일인 대출한도('11.3말, 억원) : 신협 44/9, 농협 147/30, 산림조합 34/7

② **신협**의 **간주조합원***에 대한 **대출 총량한도 도입**

* 조합원과 동일세대에 속하는 자, 다른 조합의 조합원 등으로 조합원으로 간주되어 현재 별도의 대출총량한도가 없음

- 간주조합원 대출도 **비조합원 대출 총한도**(연간 신규대출 취급액의 1/3로 제한)에 포함해서 **적용**

다. 체크카드 활성화를 통해 지급결제 관행을 개선하고 불필요한 신용이용을 억제

□ **체크카드 사용 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 우대**

* 현재는 총 급여액의 25%를 초과한 사용액 중 신용카드 20%, 체크카드 25%까지 소득공제

□ **개인신용평가시** 신용카드 이용실적외 **체크카드 이용실적**도 **긍정적 요인으로 반영**

* 현재 신용카드는 장기간 연체 없이 이용한 경우 신용등급 향상요인이 되나 체크카드 이용실적은 신용등급에 반영되지 않음

□ **체크카드 가맹점 수수료율 인하** (3월말 旣 시행)

* 2.0~2.5% → (중소가맹점) 1.0%, (일반가맹점) 1.5~1.7%

2 가계대출 구조개선 방안

가. 고정금리 · 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출 활성화를 유도

□ **고정금리 · 비거치식 분할상환**대출에 대한 소득공제한도를 **확대**하고 **기타대출**은 **축소**(신규대출부터 적용)

<주택담보대출의 이자상환공제제도 개선 방안>

구 분	현 행	개선안
주택보유수	무주택자	좌 동
대상주택	3억이하 국민주택규모이하	좌 동
상환기간	15년 이상	좌 동
소득공제 한도	1,000만원	■ 고정금리·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출 : **1,500만원** ■ 기타 대출 : **500만원**

□ **시중은행의 주택신용보증기금 출연료율 차등화**

◦ **고정금리 · 비거치식 분할상환대출**에 대한 **요율**은 **인하**하고 **변동금리 대출**에 대한 **요율**은 **인상**

* (**현행**) 고정금리대출은 연 **0.125%**(거치식·비거치식 구분 없음)
변동금리대출은 연 **0.260%**

□ **은행의 고정금리 · 비거치식 분할상환대출 비중 확대** 유도

◦ **고정금리 · 비거치식 분할상환대출 비중**이 **'16년말까지 전체 주택담보대출의 30% 수준**까지 상향될 수 있도록 유도

- 은행은 **자체 정상화 연차 목표***(예 : 매년 3년주기)를 설정하고 감독당국은 **이행실적**을 **점검**

* 고정금리대출 비중과 비거치식 분할상환대출 비중은 분리 운영도 가능

◦ **고정금리 · 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출상품 및 혼합대출*** **상품 개발** 및 **활성화** 유도

* 대출금의 일정부분(예: 20%~50%)이 고정금리·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출인 상품 (상기 목표대출 실적에 포함)

※ 은행연합회를 중심으로 **실무T/F를 구성**하여 **가이드라인을** 마련하고, 안내 데스크 설치 등 on-off 라인을 통한 상품 안내·홍보 강화(은행연합회)

나. 주택금융공사를 통한 **은행의 고정금리·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출 지원**

□ **고정금리·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출**에 대한 **매입·유동화**(MBS발행) **지원**

□ **은행의 커버드본드 발행 활성화** 추진

◦ 주택금융공사의 보증을 활용하는 경우 보증대상은 기초자산에 **고정금리·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출을 일정비율**(예 : 20%~50%) **이상 포함**

* 고정금리·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출 증가추이를 보아가며 편입비율 확대

□ **MBS·커버드본드 발행여력 확대**를 위한 **자본금 확충**

◦ **고정금리·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출 확대 및 유동화 수요**를 보면서 **자본금 확충**

3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방안

□ **변동금리부 대출에 대한 소비자 보호 강화**

① 변동금리 대출상품 판매시 **고지의무** 등 강화

- 차주에 대한 **고지**가 **필요**한 **필수사항 규정**

※ 고지의무사항(예시) :
(ⅰ) **금리·금리변동주기·금리변동사유** 등 기본적 사항
(ⅱ) 금리변동상품의 **위험성 고지 및 차주 확인**
(ⅲ) 금리변동폭에 따른 **차주 부담 증가액**(월간, 연간)
(ⅳ) 최근 5년간 최대금리 변동폭 및 부담 증가액

- **금리변동시 충분한 사전고지 기간 부여**(예 : 최소 1개월전)

* 현재는 서비스를 신청한자에 한해 1~2주전 고지

② **변동금리 대출**에서 **고정금리** 대출로 전환시 **중도상환 수수료 면제**

* 현재 은행은 대출약정일로부터 3년 이내 조기상환시 약 1.5% 수수료 부과

③ 변동성이 낮은 **COFIX**(잔액기준) **연동대출을 확대**하고 **대출금리 변동폭을 축소**하는 **옵션부 대출상품 개발** 유도

<금리상한 옵션 대출상품 종류>

全기간한도(lifetime cap)	대출 전기간 중 인상한도 설정
기간한도(periodic cap)	금리조정시마다 1회 인상한도 설정
상환한도(payment cap)	금리조정시 월 상환금액 증가 한도를 설정

- **CD(3개월) 등 여타 금리 연동대출**에 대해서는 **금리변동 상한을 제시**(금리상한 옵션 대출 상품 판매 등)토록 유도

- **금리변동주기 확대**(3개월 → 6개월 또는 1년 이상) **유도**

* 통상 금리변동주기는 3개월(미국은 1년, 일본은 6개월 이상)

※ 분기별 추진계획 및 실적을 제출받아 이행상황 점검(은행 등 가능한 업권부터 先시행)

□ **대출모집인의 불법·부정행위** 등에 대해 **수시 점검**

◦ 대출모집인에 대한 **전면 실태조사·불법부당행위**에 대한 **엄정 제재** 및 필요시 **법적 규제장치** 마련(협회별 T/F 구성)

◦ **부동산 중개업소**에 대해서도 **대출중개 행태 및 중개수수료** 등 실태조사 강화 등 관련 대출모집인의 불법·부당행위 **엄정 제재**

□ **불법·허위광고 및 과장광고 근절**

◦ 관련법규 **준수 여부**를 **상시 점검**하고 위규사항에 대해서는 **엄중 조치**

* 일선점포 불법·허위·과장광고에 대한 본점의 책임 강화

4 서민금융 기반 강화 방안 (신규과제는 밑줄)

◇ **금융위기 이후 어려움이 심화된 서민들의 금융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다각적인 대책을 추진중**

◇ **가계부채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**해 나가는 과정에서 서민가계에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**서민금융 기반을 강화**

※ 11.4.15일 발표한 「서민금융 기반강화 종합대책」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이를 토대로 보완대책을 추진

□ **미소금융 · 햇살론 · 새희망홀씨** 등을 통해 **서민금융 공급 확대**

◦ **(미소금융)** 제도권 금융접근이 곤란한 서민들에게 **대출**과 더불어 **자활컨설팅** 지원(10.1~11.6 : 2,521억원 대출)

- **미소금융** 컨설팅 강화를 위한 **전문인력 양성** 및 **지역·직능 단체 등과의 연계 강화 추진중**

* 금년중 미소아카데미를 통해 컨설팅 전문인력 4천명 교육
* 현재 세탁업중앙회, 미용사 협회 등으로부터 적격자를 추천받고 있는 것을 여타 단체로 확대

◦ **(햇살론) 정부 및 민간출연금**으로 보증재원을 마련하여 **저신용 · 저소득 서민층**에게 **10%대의 저금리로 대출** (10.7~11.6 : 1조6,368억원 대출)

- 서민들에 대한 긴급 생계자금 지원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**자금지원기준 등 개선**

* (예시) 소득대비 채무상환액비율 탄력적용, 보증지원절차 간소화 등

◦ **(새희망홀씨)** 기존 **은행권 서민금융상품**인 '희망홀씨'의 **지원대상 확대 등 개선**(10.11~11.5 : 6,867억원)

- **새희망홀씨 지원기준, 지원목표액** 등을 포함한 **자율규약** 제정

□ **금리·수수료 인하** 등 서민들의 **금융이용부담을 완화**하고 **인프라 개선** 등을 통해 **금융접근성 제고**

◦ **(신용카드 수수료 인하) 전통시장·영세 자영업자**들의 **카드수수료 상한**을 **대형마트·백화점 수준으로 인하**

* 전통시장내 중소가맹점 : 2.0~2.2% → 1.6~1.8%
기타 중소 가맹점 : 3.3~3.6% → 2.0~2.15%

- 수수료 인하대상 중소가맹점의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 ((10.4) 9,600만원미만 → (11.5) 1.2억원미만 → (12.1) 1.5억원미만)

◦ **(고금리 대부업 피해 방지) 대부업 최고금리**를 **단계적**으로 **인하**(**연49%→연44%(10.7)→연39%(11.6)**)하였으며, **과다·허위 대부광고**에 따른 **서민피해 방지 방안** 마련·추진

◦ **(금리비교공시 확대) 저축은행** 대출금리 **비교공시 대상 정보를 확대**하고 **상호금융·대부업**에도 **비교공시제도 도입**

◦ **(대출중개비용 경감) 여신금융협회**의 **온라인 대출중개 기능** 수행, **불법 대출중개 단속강화, 다단계 대출중개 행위 금지*** 등을 통해 서민층 고금리부담 완화

* 다단계 대출중개행위 금지 등을 위한 대부업법 개정 준비중

◦ **(개인신용평가제도 개선) 신용조회기록** 및 **10만원 미만 연체정보 미반영, 단기연체정보 반영기간 축소**(5년 → 3년)

* 현재 금융위·금감원 공동으로 세부시행기준 마련을 위한 T/F 운영중, 전산시스템 변경 등을 거쳐 10월부터 시행 예정

- 금융회사가 보유한 차주의 **우량정보**를 **모든 신용조회회사**에 **제공하고 신용평가시 적극 반영**

* 4.28일부터 정보집중 개시, 10월부터 신용평가시 반영 예정

□ **저신용·저소득층**의 **대출만기 연장**과 **금리부담 경감**을 위해 **채무조정·전환대출** 등 **지원노력 강화**

◦ **(신용회복) 금융채무불이행자** 대상으로 **원리금 감면 및 만기연장** 등 채무조정 지원(08년 이후 47.6만건 지원)

- 3개월 미만 연체자를 대상으로 하는 **사전채무조정**(프리워크아웃) 제도를 **2년간 연장 시행** 중(당초 11.4월 종료 예정)

- 6.1일부터 **채무 상환기간(8년→10년) 및 상환 유예기간(1년→2년) 연장** 시행 등 신용회복 제도 보강

- **"사이버 지부" 활성화, 안내·홍보활동 강화, 신용회복지원협약 참여기관**(현재 3,523개) **확대** 등을 통해 **신용회복지원 활성화** 추진

◦ **(소액대출·취업지원)** 신용회복지원자들의 성공적 재기를 지원할 수 있도록 **긴급자금지원** 및 **취업지원**

- 신용회복지원자 중 1년이상 성실상환자에 대한 **긴급 재활자금**(4%) **지원규모 확대**(10년 700억원→11년 1,000~1,200억원)

* 은행 등의 추가 기부금 출연 등 재원확대방안 강구

- 신용회복기금에서 운용중인 **200억원** 규모의 **취업지원펀드**를 취업지원사업의 성과를 보아가며 **500억원**까지 **확대**

◦ **(전환대출) KAMCO가 운영하는 신용회복기금의 보증지원**을 통해 **6등급이하** 서민층의 고금리대출을 **12%내외**의 **은행대출로 전환**(08년이후 4,697억원 지원)

- **지원대상 확대 및 창구 확대** 등 **전환대출 지원 보강**

* 지원대상(6.10 시행) : (현행) 6~10등급 → (개선) **연소득 2,600만원 이하**
* 지원창구(6.30 예정) : (현행) 6개 은행 창구 →(개선) **전국 모든 은행 창구**

Ⅲ. 추진 계획

□ **하반기부터 단계적으로 시행**

◦ **조기시행**이 가능한 사항은 **7월중** 추진

◦ **모범규준·가이드라인** 등 마련이 필요한 사항은 **금감원·은행연합회 공동 실무 T/F**를 구성·검토후 **하반기중 시행**

◦ **법령·규정개정**이 필요한 사항은 **금년중 개정완료**

- **법률 개정사항**은 **금년중 국회 제출** 추진

□ 앞으로 **가계대출 동향, 대책의 시행효과** 등을 보아가며 **추가검토후 보강대책을 추진**

① **가계대출 적정증가를 위한 제도적 장치** 도입

◦ 가계대출이 **적정수준**(예 : 직전 5년간 경상 GDP 성장률)**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의 일정부분**(예 : 10%~50%)을 **준비금**의 형태로 **적립**토록 하는 방안

* 준비금 적립시 배당이 제한되므로 간접적으로 가계대출 확대를 억제 (당기손익 및 배당을 제한하는 현행 대손충당금과는 달리 당기 손익에는 영향을 주지는 않고 배당만 제한 ; 대손준비금과 유사)

⇨ **적정수준 기준, 적립률** 등 **운영방안에 대해서 보다 면밀한 검토와 영향분석, 은행권 의견수렴**을 거쳐 결정

② **은행 예대율 준수비율**(현행 100%) **하향** 조정

③ **만기 및 거치기간 연장 관행 개선**

④ **고위험·편중대출 관리 추가강화 등**

별 첨 **금융부문 대응방안 추진 일정**

추진 과제	필요 조치	시행시기	소관부처
1. 가계부채 적정증가 방안			
나. 은행권			
1 고위험 및 편중대출 BIS 규제 강화	시행세칙 개정	11년중	금감원
2 영업점 성과평가 개선	지도공문 발송	11.7월중	금감원
3 대출상환능력 확인 강화	지도공문 발송	11.7월중	금감원
4 예대율 관리 강화	지도공문 발송	11.7월중	금감원
가. 비은행권			
1 여전사 레버리지 규제도입 및 회사채 발행 특례 폐지 추진	여전법 등 개정	11년중 국회제출	금융위
2 여전사 대손충당금 규제 강화	감독규정 개정	11년중	금융위
3 상호금융 동일인 대출한도 강화	시행령 등 개정	11년중	금융위
4 신협 간주조합원 대출총량한도 도입	시행령 개정	11년중	금융위
5 상호금융 대손충당금 규제 강화	감독규정 개정	11년중	금융위
다. 체크카드 활성화			
1 체크카드 세제혜택 우대	소득세법 개정	11년중 국회제출	기재부
2 체크카드 이용실적 신용평가 반영	신평사 자율시행	11년중	
2. 가계대출 구조개선 방안			
가. 고정금리·분할상환 활성화			
1 소득공제 차등화	소득세법 개정	11년중 국회제출	기재부
2 주신보 출연료율 차등화	시행규칙 개정	11년중	금융위
3 은행별 목표관리 강화	지도공문 발송	11년중	금감원
나. 장기자금조달 여건 마련			
1 MBS 및 커버드본드 발행 활성화	가이드라인 마련	11년이후	금융위·금감원
3.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방안			
1 변동금리대출 설명의무 강화	가이드라인 마련	11년중	금융위·금감원
2 고정금리 전환시 중도상환수수료 면제	가이드라인 마련	11년중	
3 잔액기준 COFIX 유도	실적점검	11.7월중	
4 금리상한상품 활성화	가이드라인 마련	11년중	
5 대출모집인 규제 강화	실태점검	11년중	
6 불법·허위 광고 억제	실태점검	11년중	
4 서민금융 기반강화 방안			
1 서민우대금융 자금지원기준 등 개선	여신심사 가이드라인 개선	11.7월	금융위
2 과다 허위 대부광고 피해방지	대부업법 개정	11년중 국회제출	금융위
3 신용회복지원 활성화	실적점검	11년중	금융위